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588
----------	-------

발의연월일 : 2025. 7. 21.

발 의 자 : 배준영 · 강명구 · 구자근
이인선 · 김미애 · 조은희
김정재 · 이종배 · 최은석
김종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및 농지 확대 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농지와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분합하는 농지 및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최근 비료·농약·사료 등 영농자재의 가격 상승, 쌀값 하락,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국내 농업의 경제적 상황이 더욱 위축되고 있음.

이에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민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같은 법에 따른 농지 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u>2025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 ----- ----- ----- ----- ----- <u>2030년 12월 31일</u> -----. ----- ----- ----- ----- ----- -----.
②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u>2025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가 교환·분합하는 경우에는	② ----- ----- ----- ----- ----- ----- <u>2030년 12월 31일</u> ----- -----. ----- ----- ----- -----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 ④ (생 략)	-----. ③ · ④ (현행과 같음)
--------------------------------	--------------------------